

2020년도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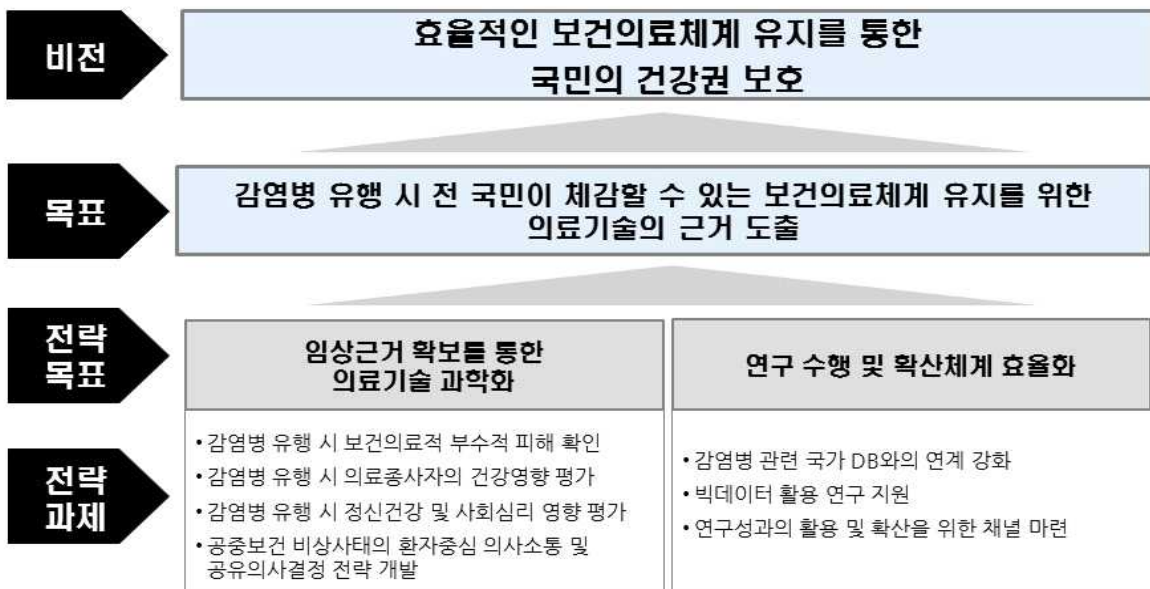
2020년도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 7월 29일

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사업단장

<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사업 개요>

- (사업 목적)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자원 분배·활용과 비감염성질환 진료의 안정적 유지,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의료종사자와 국민의 심리·정신보건 측면 영향력 분석 등에 관한 연구수행
- (사업 특성) 방역·의료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, 안전성·유효성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에 대한 근거생성
- (사업 전략체계)



- (사업 구조)
 - 각 세부과제는 전향연구 및 후향연구 유형으로 나뉘어짐

I. 공고 개요

- 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‘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’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공고단위 (RFP명)	지정 주제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 대상	선정예정 과제 수 (내외)
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전향연구	1	35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75백만원 이내)	2년 이내 (1차년도는 6개월 이내)	학·연·병	1
	2	35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75백만원 이내)	2년 이내 (1차년도는 6개월 이내)		1
	3	20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100백만원 이내)	2년 이내 (1차년도는 6개월 이내)		1
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	1~4	150백만원 이내/년 (1차년도 75백만원 이내)	2년 이내 (1차년도는 6개월 이내)		4

*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단위별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

II. 신청 요건

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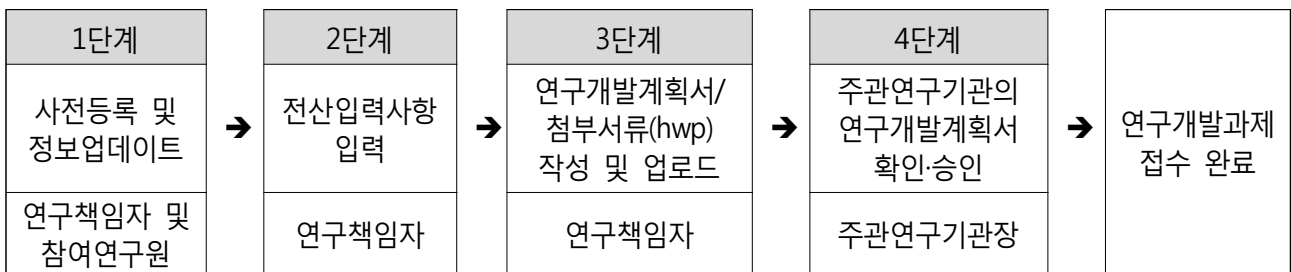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- ※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- ※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 - *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-5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」 참조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주관 및 세부 연구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Ⅲ. 신청 방법

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/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(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)
 - ※ 연구자, 연구기관,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이미 등록된 경우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 - 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

□ 서류제출기한

- ※ **공고단위(RFP)별 신청마감 시간(12:00) 엄수 (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)**
- ※ RFP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공지함
- ※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공고단위 (RFP명)	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	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
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전향연구	2020. 8. 7.(금) 12:00	2020. 8. 7.(금) 14:00
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		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 등
- ※ 관련규정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 → 관련법규에서 확인

V. 기 타

-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 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'을 작성·첨부하여 '과제평가단'의 심의를 받아야 함
 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 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'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VI. 문의처

구분	연락처	
RFP 안내	02-2174-2835, 김수진 02-2174-2847, 류수락	pacen@neca.re.kr
연구비 및 평가 안내	02-2174-2841, 김승태 02-2174-2843, 이민주	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